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5712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박용식, 안은진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지연,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경홍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521,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7.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419,89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거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인천 남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사업주체인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위 아파트는 2010. 7.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2008. 9. 1.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세대 현관문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 계약금액을 358,644,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0. 1. 31.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의 각 세대 현관문(이하 피고가 시공한 부분을 포함하여 최종 완성된 세대 현관문을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방화문 등의 하자 관련 선행 소송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시공사인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8913호로 이 사건 방화문과 아파트 공용부분에 설치된 방화문 등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방화문 등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각종 방화문의 성능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원고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근거하여 하자보수에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거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체 1,509세대 중 1,186세대로부터 분양자인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위 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같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위 소송의 감정인 E은 이 사건 방화문 중 표본으로 선정한 16개에 대한 KS F 2268-1 시험(방화문의 내화시험) 결과 12개가 내화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화문 중 75%(= 12개/16개 × 100%)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그 보수비용은 위 방화문의 문짝과 문틀을 함께 교체하는 방법의 경우 1,200,938,660원, 문짝만 교체하는 방법의 경우 584,711,677원이라는 감정결과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7. 8. 25. 이 사건 방화문에 하자가 존재하고, 위 방화문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위 방화문의 문짝과 문틀을 함께 교체하는 데에 소요되는 1,200,938,660원이라고 판단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방화문 등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각종 방화문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901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16. 이 사건 방화문의 기존 문틀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 이상 하자가 있는 위 방화문의 문짝을 철거한 후 새로운 문짝을 기존 문틀과 결합하여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위 방화문에 대한 적절한 보수방법이고, 이 사건 방화문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584,711,677원임을 전제로 위

1)항 기재 채권양도 세대(1,509세대 중 1,186세대)에 관한 공유부분에 설치된 방화문의 하자보수비용은 118,800,261원, 이 사건 방화문을 포함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방화문의 하자보수비용은 714,248,348원으로 총 833,048,609원(= 118,800,261원 + 714,248,348원)이나,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70%인 583,134,026원(= 833,048,609원 × 70%, 소숫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법원 2018다246200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0. 12.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앞서 본 원고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을 통틀어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하자 있는 이 사건 방화문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함에 따라 선행 소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425,419,8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다만 아래 1)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과 2)의 가)항 채무불이행 책임, 3)항의 하자보수비 책임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택한다].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이 사건 방화문 설치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방화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담보책임의 하나로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비는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위 방화문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비인 584,711,677원에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책임제한 비율 70%를 참작한 409,298,173원(= 584,711,677원 × 70%)이다.

2)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는 하자 있는 이 사건 방화문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수급인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손해액은 위 방화문의 하자보수비인 위 409,298,173원이다.

나)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인 16,121,723원도 수급인인 피고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이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

원고는 선행 소송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하자보수비 및 소송비용 425,419,896원(= 409,298,173원 + 16,121,723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원래 하자 있는 위 방화문을 설치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위 425,419,896원을 부담함에 따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하자는 도급인인 원고의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방화문을 하니콤과 발포우레아폼을 사용하여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위 각 소재들은 내화성능이 부족한 것으로서 하자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설령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하자보수책임은 대폭 감경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에는 피고가 시공하지 아니한 디지털 도어록의 교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하자보수비용에서 디지털 도어록 교환비용 245,054,055원(= 162,395원 × 1,509개)은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화문 중 75%에 그 설치 당시부터 관련 법령에 정해진 내화성능을 결여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63호) 제5조 제2항은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 · 연직하중강도 · 개폐력 · 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방화문 중 표본으로 선정된 방화문에 대하여 KS F 2268-1 시험(방화문의 내화시험)이 이루어졌으나, 위 표본 중 75%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②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의 피해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무게와 두께의 금속을 비롯하여 쉽게 변질되지 않는 재질로 구성되고 견고하게 설치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고려해보아도 위 아파트 입주자의 통상적인 거주 환경에서 방화문의 내화성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1)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67조 제1, 2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에 관하여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방화문의 문짝과 문틀은 주문제작품이 아니라 규격품으로서 제작 과정에서 별도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고, 설치 과정 역시 문틀이 먼저 시공된 후 나중에 문짝을 문틀에 결합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점, 선행 소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방화문에 대한 내화시험에서 불합격된 방화문의 문틈에서 발생한 화염은 문짝의 변형으로 인한 것이고, 방화문의 문틀에서는 화염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적절한 하자보수방법은 위 문짝만의 교체로 위 방화문을 보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방화문은 피고가 시공한 세대 현관문과 피고가 시공하지 않은 디지털 도어록이 각 1개씩 결합되어 일체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 현관문 1,509개(= 19평 현관문 53개 + 24평 현관문 511개 + 33A평 현관문 267개 + 33B평 현관문 267개 + 34평 현관문 292개 + 44평 현관문 119개)를 설치한 사실,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비용은 문짝만 교체하는 방법의 경우 584,711,677원이고, 위 방화문 전체에 대한 불량률이 75%이므로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 방화문의 개수는 총 1,131개(= 1,509개 × 75%)인 사실, 위 하자보수비용은 이 사건 방화문과 일체가 된 디지털 도어록에 대한 교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디지털 도어록의 교환비용은 1개당 162,3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방화문의 문짝만 교환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위 584,711,677원에서 하자보수 대상이 된 방화문 1,131개에 대한 디지털 도어록 교환비용 183,668,745원(= 162,395원 × 1,131개)을 제외한 401,042,932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방화문 중 세대 현관문에 대한 시공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위 방화문과 일체가 되는 디지털 도어록에 관한 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방화문에 관한 하자가 디지털 도어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행해야 하는 위 방화문에 관한 하자보수 범위에 디지털 도어록의 교환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비록 디지털 도어록이 세대 현관문과 일체를 이루어 이 사건 방화문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계약 금액(358,644,000원)과 디지털 도어록의 설치비용[=245,054,055원(=162,395원 × 1,509개)]을 비교해볼 때 디지털 도어록 설치공사는 세대 현관문 설치공사와 비슷한 중요성을 갖는 별개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방화문 중 세대 현관문을 신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디지털 도어록 역시 신제품으로 교환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방화문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정당한 하자보수비용은 세대 현관문의 교환비용과 기존 디지털 도어록을 세대 현관문에 설치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은 이 사건 방화문 중 세대 현관문의 교환비용과 디지털 도어록의 교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584,711,677원에 방화문 1,131개에 대한 디지털 도어록 교환비용 183,668,745원을 제외하고, 기존 디지털 도어록의 설치비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설치비용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 및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다) 책임제한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50%인 200,521,466원(= 401,042,932원 × 50%)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부터 이 사건 방화문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6년 2개월이 경과하여 위 방화문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특기시방서에는 이 사건 방화문을 허니콤 및 발포우레아폼으로 제작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발포우레아폼은 고열이 가해지게 될 경우 연소 및 용융되면서 화재의 확산 및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시공상 지시로 위 방화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④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계약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시공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선행 소송에서 인정한 원고의 책임제한 비율보다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을 더 낮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200,521,46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하자보수를 구한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행 소송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을 가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9. 2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특기시방서에는 이 사건 방화문의 재질을 허니콤 및 발포우레아폼으로 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발포우레아폼은 고열이 가해지게 될 경우 연소 및 용융되면서 화재의 확산 및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특기시방서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품질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대 방화문의 반입 전 도급인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공사 재료는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급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은 시공 부분을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방화문에 발생한 하자가 원고의 지시에 따른 시공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방화문이 허니콤 및 발포우레아폼의 자재로 시공되어 위 방화문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방화문 중 하자가 발생한 75% 비율의 방화문을 제외한 나머지 25% 비율의 방화문은 내화성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재들로 시공한 방화문이 필연적으로 내화성능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기 시방서에 이 사건 방화문의 재질을 허니콤 및 발포우레아폼으로 명시함에 따라 위 방화문의 하자가 일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정은 피고의 책임제한에 고려하였다), 원고의 위 시공상 지시가 위 방화문에 관한 하자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거나, 그에 따라 위 방화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전가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특기시방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각 규정은 수급인에게 도급인의 품질관리 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각 규정을 근거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시공에 관한 품질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방화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화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도급인이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일반적인 품질시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방화문의 시공을 허락하였고, 나중에 위 방화문의 내화성능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위 방화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인 하자 없는 목적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즉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이 사건 방화문을 시공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도급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200,521,46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같은 금액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21,46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한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행 소송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을 가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9. 2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도급인이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16,121,723원 역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소송비용 16,121,723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살펴보면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소송비용 16,121,723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방화문에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선행 판결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 시공사로서 자신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이지 피고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도근, 판사 이창원, 판사 방혜미